

거창군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의안 번호	2005 ~ 22
----------	-----------

제출년월일	2005. 5.
제출자	거창군수

□ 제정이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면 수급자의 자활자립지원 및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토록 하고, 다른 사회복지관련 기금과 통합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군의 거창군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과 통합하여 운용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수급자의 자활자립 지원과 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 및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생활보장기금과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조)
- 기금은 군 및 그 이외 자의 출연금 등으로 함.**(안 제3조)**
- 지원대상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사업 실시기관 등이며 사업범위는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및 소규모 영세상 행위 등을 위한 자금으로 함.**(안 제4조)**
- 기금의 융자한도 및 이율은 기초생활보장기금 7천만원 연 3퍼센트, 생활안정기금 1천만원 연 3퍼센트 연체 이율은 15퍼센트로 함.**(안 제5조)**
- 융자금의 상환은 기초생활보장기금 5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생활안정기금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하도록 함.**(안 제8조)**

□ 제정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 「지방자치법」 제133조

거창군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거창군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군수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을 설치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① 기초생활보장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 및 그 이외 자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기타수익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및 출연금
5. 자활근로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입금
6.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 운용 수입금
7. 부정수급자에 대한 과년도분 보장비용 징수금

② 생활안정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 및 그 이외 자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기타수익금
3. 생활안정기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 운용 수입금

제4조 (지원대상 및 사업범위) ①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용자대상은 군내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이나 기관 및 단체 등으로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2.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3.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4.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 실시기관
5.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근로활동과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6.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② 기초생활보장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자활공동체의 사업자금 대여
2.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 지원 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3.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
4.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③생활안정기금은 군내의 거주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법에 의한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가구에 지원한다.

1. 소규모 점포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2.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중 일부
4. 직계비속인 자녀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생중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의 학자금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제5조 (용자한도 및 이율 등) ①자활공동체 및 가구당 용자한도액은 기초생활보장기금 7천만원, 생활안정기금 1천만원으로 한다.

②용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3퍼센트로 하고 상환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용자금에 대하여는 15퍼센트의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6조 (용자금 대부신청 절차) ①기초생활보장기금의 용자금을 대부 받고자 할 경우 자활공동체는 대표자가, 가구는 세대주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자활후견기관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생활안정기금의 용자금을 대부 받고자 하는 가구는 세대주가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기금 용자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신청을 받은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지체 없이 용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7조 (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용자금의 상환) ①용자금의 상환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초생활보장기금 : 5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2. 생활안정기금 :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②용자금 상환의 연장, 용자금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용자금 대여) ①군수는 용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여하여 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군수는 금융기관에 대여시 약정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제10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군수가 운용·관리하되,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기초생활보장기금과 생활안정기금의 계정을 각각 분리하여 운용·관리 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거창군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거창군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기능)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기본운용계획 심의조정
2. 용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및 감면
3.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조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세입 및 세출) ①기금의 세입은 일반회계의 전입금, 기부금, 상환금, 기금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기금의 세출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자금으로 한다.

제15조 (기금관리공무원)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사회복지과장
2. 기금출납원 : 사회보장담당주사

제16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17조 (준용규정) ①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라 운용한다.

②제1항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거창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거창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폐지된 조례에 의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으로 한다.